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 번호	2022-17
----------	---------

발의연월일 : 2022. 1. .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2022. 1. 13.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따른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제정 필요

##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규칙의 적용범위를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 및 확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라. 의원면직 제한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사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나. 협조부서 및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